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28
----------	------

2021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1년 4월 2일
- 다. 회부일 : 2021년 4월 6일
- 라. 상정일 :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윤재 감사위원장)

가.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2조).
 - 민간위원 수: (현행) 7명 → (개정) 9명
 - 총 위원 수 : (현행) 11명 → (개정) 13명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
- 조례 개정사항을 「공직자윤리법」 개정(2021. 6. 23. 시행)에 맞추어 시행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1.1.28.~2.17.)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1)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음.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u>11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 ----- ----- ----- <u>13명</u> ----- ----- ----- -----
1. <u>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u>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u>제2조</u>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u>추천한자</u>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u>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u> ----- ----- <u>제2조에</u> ----- ----- <u>추천한자</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본 개정안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 〉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일부개정	법률 10982호 2011.7.29.일부개정	법률 제17754호 2020.12.22.일부개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u>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u>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시·군·구 관련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1명의 위원</u>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u>7명의 위원</u> 은 <u>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u>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시·군·구 관련사항)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3명의 위원</u>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u>9명의 위원</u> 은 <u>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u>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시·군·구 관련사항) [시행일:2021.6.23.]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민간위원 수 확대(안 제2조).

- 민간위원 수 : (현행) 7명 → (개정) 9명
- 총 위원 수 : (현행) 11명 → (개정) 13명

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 법관 → 판사·검사·변호사

다. 맞춤법 정비

- “제2조 에” 를 “제2조에” 로, “추천한자” 를 “추천한 자” 로 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재산 증식,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헌법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 수, 위원 자격, 기능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위원회를 41회 개최하여 1만 9천 여명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 중 3천 8백여명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였음.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요 〉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 **기 능 : 심사 의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처리
-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등

□ **위원구성 및 임기**

- 구 성 : 11명(외부위원 7명, 시의원 2명, 市소속 공무원 2명) / 최초구성 : 1993.9.13.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 시의원·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
- 위원현황 : 11명 (외부위원 7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시의원 : 소관 상임위 임기내, 공무원 : 직위 재직기간)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 〉

구 분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개최 (건)	41 (158)	7 (46)	8 (35)	9 (28)	9 (27)	8 (22)

출처 :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및 처분현황 〉

구 분	회의개최 (회)	안전처리 (건)	심사실적 (명)	처분결과(명)				실무종결 (이하)
				계(명)	법적조치	시정경고	보완명령	
합 계	41	158	18,614	3,444	81	1,364	1,999	15,170
2016년	8	22	4,229	952	0	377	575	3,277
2017년	9	27	3,974	732	6	359	367	3,242
2018년	9	28	3,036	444	24	154	266	2,592
2019년	8	35	4,636	899	41	364	494	3,737
2020년	7	46	2,739	417	10	110	297	2,322

〈 최근 5년간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

(단위:명)

구 분	소계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소 계	취업가능	취업불가	소 계	취업가능	취업불가
총 계	290	256	246	10	34	28	6
2020	69	65	64	1	4	3	1
2019	82	70	64	6	12	10	2
2018	73	62	61	1	11	9	2
2017	39	35	34	1	4	4	0
2016	27	24	23	1	3	2	1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과태료 부과 통보 현황 〉

(단위:명)

	계	서울시	소방	자치구	공직유관단체
계	132	13	103	11	5
2020	53	3	44	4	2
2019	35	5	24	4	2
2018	17	3	12	1	1
2017	10	-	10	-	-
2016	17	2	13	2	-

2) 조문별 검토

가. 민간위원 수 확대

- 안 제2조제1항과 같은 항 제1호는 민간위원의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여, 위원 총 수를 1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의 연혁 〉

1981.12.31. 제정 법률 제3520호	1993.6.11. 일부개정 법률 제4566호	2011.7.29. 일부개정 법률 10982호	2020.12.22. 일부개정 법률 제17754호
총 7인 · 민간위원 2인 · 정부위원 5인 ※ 위원구성 규정 없음. ※ 시행령으로 위원구성 규정	총 9인 · 민간위원 5인 · 정부위원 4인 · 위원장은 민간위원 ※ 법으로 최초 위원구성 규정	총 11명 · 민간위원 7인 · 정부위원 4인 · 위원장은 민간위원	총 13명 · 민간위원 9인 · 정부위원 4인 · 위원장은 민간위원 ※ <u>2021.6.23. 시행예정</u>

※ 1993년과 2011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전관예우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확대하였음.

- 민간위원 확대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2021.6.23. 시행)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여 심의·의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는 것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경우에도 민간위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관여를 차단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사안에 따른 의결 정족수 (이원화)

- 일반사안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 특정사안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 특정사안(2/3찬성)은 본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 ①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사항
 - 특정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
 - ② 재산등록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 거짓 재산등록, 중대사항 누락, 허위자료 제출 등
 - ③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자, 소명자료 미제출자, 거짓소명 제출자 등
 - ④ 고발에 대한 사항
 - 재산등록 거부, 주식백지신탁 거부, 거짓자료 제출, 무허가 열람·복사, 비밀누설, 취업제한·업무취급·행위제한 위반 등

〈 개정안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 〉

		현행	개정안
총원		11명	13명
민간위원 수		7명	9명
과반수 찬성	의결 정족수	6명	7명
	산술상 정족수	5.5명	6.5명
2/3이상 찬성	의결 정족수	8명	9명
	산술상 정족수	7.2명	8.6명

- 다만, 위원회는 매년 7회 이상 개최하고 있고, 현재 7명의 민간위원의 임기종료(2022.2.24.) 시까지 여러 번의 회의 개최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법령시행일(2021.6.23.)에 맞춰 제출하고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민간위원의 임기가 일시 종료된 후 신규 위촉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개정사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개정안(의안번호 2328) 의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감사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의 시행일에 맞춰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할 예정에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여부와 추진일정 등을 점검하여 개정사항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변경

- 안 제2조제1호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법조인은 법관(판사) 1명, 변호사 2명 등 총 3명이 위촉되어 있음.

※ 개정안 중 위원자격 변경관련 내용 : 법관교육자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 법관

- 「헌법」제104조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법원조직법」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황 >

	구분	성명	현직	임기
1	위원장	○○○	법무법인 고문	'20.2.24. ~ '22.2.23.
2	외부위촉	○○○	변호사	'20.2.24. ~ '22.2.23.
3		○○○	연구소장	'20.2.24. ~ '22.2.23.
4		○○○	대학교수	'20.2.24. ~ '22.2.23.
5		○○○	판사	'20.2.24. ~ '22.2.23.
6		○○○	변호사	'20.2.24. ~ '22.2.23.
7		○○○	언론인	'20.2.24. ~ '22.2.23.
8	시의원	○○○	시의원	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9		○○○	시의원	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10	소속 공무원	○○○	부분부장	임명시 직위 재임기간
11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	당연직

※ 본 위원회 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

○ 위원의 자격요건이 법관(판사)으로 특정된 이유는 법령 시행 초기 재산공개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사생활 침해, 위헌소송, 기관 자율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 법원의 공신력을 빌어 제도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중 일부의 자격이 ‘법관’ 으로 특정된 사유

「공직자윤리법」 시행 초기에 제기되었던 재산공개제도가 사생활 침해문제와, 이로 인한 위헌심판 청구를 사전에 대응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로 인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1993년,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시 제안설명 발췌

〈 제16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7호(1993.5.2.) 〉

○○○ 의원 (중략)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생활의 보호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구하는 사태에 미리 입법부로서 대응한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하면, 10년전 1980년에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총무처에 알아본 결과 단 한 번의 활발한 활동도 없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산공개만 요란하게 해서 신문과 국민들에게 고십거리만 제공할 뿐 사생활만 침해할 뿐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의 정화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하는 척만하는 재산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이 자율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그 외부인사를 누가 뽑느냐 해당기관에서 뽑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중략)

그리고 외부인사 과반수는 나는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해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외부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에서 위임해서 우리한테 부과한다면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인데 우리가 위임했습니다.

(이하 생략)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본 조례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법관·교육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요건이 제한적(법관 등)이거나, 모호한 측면(교육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원 중 일부가 법관으로 특정된 규정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하는 것은 법관 외에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법률적 식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당초 민간위원의 일부를 법관으로 한정된 사유가 법률적 식견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신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자격을 쉼표(,)가 아닌 가운뎃점(·)으로 열거하고 있어,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1명씩 위촉하는 것이 아닌 이중 1인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 서울은 대한민국의 법관 중 35.6%(3,214명 중 1,146명)가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는 법원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겪는 위원구성의 어려움이 적으며,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다수의 법조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위원자격의 정비가 위원 구성의 용이성 확보에 치중하기보다 심의의 공정성, 정당성, 객관성 확보와 함께 시민의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지역 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 법관 부족

법관이라는 제한적 자격요건으로 인해 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부합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법원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법관의 발령에 따라 임기 중 위원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지역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대법원장, 대법관 제외) 〉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사	계
전국 합계	7	28	102	41	1111	97	290	1538	3,214 (100%)
서울지역 합계	1	8	62	0	362	97	135	481	1,146 (35.6%)
대법원			2			97			
서울고등법원	1		60				135		
서울중앙지방법원		1			172			202	
서울가정법원		1			15			30	
서울행정법원		1			15			37	
서울회생법원		1			9			32	
서울동부지방법원		1			35			42	
서울남부지방법원		1			48			58	
서울북부지방법원		1			36			44	
서울서부지방법원		1			32			36	

출처 :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1], 발췌 및 재구성(서울지역합계 및 비율)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조례의 규범적 완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본 조례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위원회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

· 위원간 이해충돌 관련 : 기피·회피·제척 규정의 구체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서면심의의 원칙 규정 및 통제장치 필요

- ① 원칙-대면심의, 예외-서면심의(근거규정 필요)
- ② 연속 서면심의 제한
- ③ 서면심의의 구체적 사유 규정

· 위원의 자격의 구체화

▶ 본 조례에서 규정된 모호한 위원의 자격

- 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 교육자, ③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

○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현행 민간위원 수로 편성되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민간위원 확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부서·정책·단위·세부	2020	2021	증 감	예산과목 및 내역	(단위: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53,609	47,400	△6,209		
				(100-201-01) 사무관리비	42,400
				○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7명*9회 = 9,450
				○ 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1,500,000원*11월 = 16,500
				○ 금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	2,000원*1,000명 = 2,000
				○ 위원 심사활동비	= 9,450
				· 위원	150,000원*7명*9회 = 9,450
				○ 퇴직공직자 안내서 등 제작	= 5,000
				· 퇴직공무원 행동가이드라인 안내서 인쇄비	2,000부*2,000원 = 4,000
				· 취업심사 업무취급시스템 매뉴얼 인쇄비	500부*2,000원 = 1,000
				(10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 공직자재산조사활동	1,250,000원*4분기 = 5,000

출처 : 2021년도 서울시 예산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8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2조).

1) 민간위원 수: (현행) 7명 → (개정) 9명

2) 총 위원 수 : (현행) 11명 → (개정) 13명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조례 개정사항을 「공직자윤리법」 개정('21. 6. 23. 시행)에 맞추어 시행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1. 28.~2. 17.)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를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로, “제2조 에”를 “제2조에”로, “추천한자”를 “추천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u>11명</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7명의</u>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u>제2조</u>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u>추천한자</u>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위촉한다.</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 --- <u>13명</u>----- ----- ----- ----- ----- -----</p> <p>1. <u>9명의</u>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u>교육자</u> ----- ----- <u>제2</u> <u>조에</u> ----- -- <u>추천한자</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도록 하여 위원회 개최 시 참석·심사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안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함.

- ▶ 조례(안)으로 발생하는 비용 총액(연간) : 2,500천원
 - 연간 수당 : 250,000원×2명×5회 = 2,500천원
- ※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2021년 운영일정에 따라 연 5회로 적용하였으며, 2시간 이상 개최하여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최대)로 적용하였음.

4. 작성자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홍제희(02-2133-3161)